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776 발의연월일: 2021. 7. 27.

발 의 자:홍성국·강선우·강준현

민병덕 · 송재호 · 양기대

오영훈 • 이개호 • 이병훈

전용기 · 정일영 · 홍익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특수한 행정체제를 가진 광 역자치단체로, 시의회 의원 정수를 산정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상의 정수 산정을 배제하고 별도의 특례조항을 통하여 이를 산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구역의 확대, 신도시 지역의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인하여 타 광역자치단체 시의원 대비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과도하며, 현재의 의원 정수로는 지역 주민과의 접촉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에 제한을 받아 의정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의원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법률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16명으로"를 "19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 0분의 10으로 한다"를 "제22조제4항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 정수 변경 및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따른선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 (생	제19조(공직선거 특례)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지역선거구시의회의원(이하	②
이 조에서 "지역구시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공직선거	
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도 불구하고 <u>16명으로</u> 한다.	<u>19명으로</u>
③ 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 정	3
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	제22조제4
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	<u>항에 따른다</u> . <u><</u> 후단 삭제>
른 지역구시의원 정수의 100분	
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	
<u>는 1로 본다.</u>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